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학급 등 설치기준 변경〉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3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특수학급 등 설치기준 변경	2
2. 개정안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등·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Ⅲ. 검토의견

1. 특수학급 등 설치기준 변경(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으로, 고등학교는 7인에서 5인으로 낮추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6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u>6인</u>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 ----- ----- <u>4인</u> ----- ----- <u>4인</u> ----- ----- -----.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	3. -----

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7</u> 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 치하고, <u>7인</u>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 ③ (생략)	----- <u>5</u> 인----- ----- <u>5인</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7조제1항¹⁾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
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
짐.

□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은 유치원 과정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
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1호).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
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
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호),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제3호).

□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으로, 고등학교는 7인에서 5인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학급 설치 기준]

구 분		설치 학급 수
초등·중학교 과정	현 행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6인 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안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4인 을 초과하는 경우
고등학교 과정	현 행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7인 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안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 5인 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① 학급 신·증설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② 증설에 따른 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특수학교의 경우 부지확보 곤란 및 님비(NIMBY) 현상 등으로 신설 추진에 한계가 있고²⁾,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도심지 과밀학급 문

제 및 특수학급 기피로 인하여 특수학급 증설이 여의치 아니하여³⁾, 2025년 기준 정원초과학급이 전체 학급 중 9%를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수학교(급) 정원초과학급 현황 >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 초과 학급	비율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	19253	1,808	9.4%

자료: 교육부

주: 공립 및 사립학교 현황⁴⁾

□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195억 900만원, 2031년 3,643억 2,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7,890억 4,600만원(연평균 3,578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7~2031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학급 설치 기준 강화 (안 제27조)	419,509	321,230	334,751	349,231	364,324	1,789,046	357,809
학급 설치·운영	248,404	143,324	146,191	149,115	152,097	839,131	167,826
교원 인건비	171,105	177,906	188,560	200,116	212,227	949,915	189,9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특수학교 “부지 물색만 6년째”...학교 짓는데 ‘반대 급부’ 요구도, KBS뉴스, 2018.10.21.
“명품 동네에 특수학교 안 돼”...성동구 ‘님비’에 장애 학생 교육권 위기, 여성경제신문, 2025.07.18.
- 3) ‘엄마들 무릎 호소’ 4년 지났지만...여전히 먼 ‘학교 가는 길’, KBS뉴스, 2021.12.10.
경기도내 ‘특수교육 대상자’ 매년 늘지만, 학급 모자라 ‘희망지역 배치율’ 감소, 경인일보, 2025.10.28.
- 4) 2025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225개로 전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총 20,370개)의 1.1%에 해당하며, 교육부에서 별도로 정원초과학급 현황을 조사 중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교육부>

① 개정안 시행 시 특수학교의 학생 수용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②특수학교(급)의 학급 설치 기준이 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및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여건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며⁵⁾, ③ 현행법에 따라서도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⁶⁾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⁷⁾.

<시·도교육청>

- (대구, 광주, 충북, 경북)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만 하향 조정될 경우, 특수학교에 배치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증가가 우려되므로 교원확보 및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인천, 경기, 전북) 학급 당 정원 감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지속적 요구 발생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교사 정원, 특수학급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 수반 필수, 일률적 하향 적용보다 학생 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5) 개정안 적용 시 전체학급(19,253개) 중 60.1%인 11,580학급(초6,430/중3,057/고2,093)의 학급에서 신설 수요발생('25년 기준)

6) 초·중(6명→3명), 고(7명→4명)

7) 교육부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이나 단순 시·청각장애 학생 등으로 편성된 학급은 현행 수준의 적정 규모 학급에서 사회적 기술 함양 등 보다 나은 교육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⁸⁾, 개정안의 경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학급의 설치 및 인력의 채용 등이 필요하므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8)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